

선교기금 관리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 교단의 선교 정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업 자금의 조달 관리 및 기타 지원 방법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방법)

선교 기금의 사용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본 기금 이익금의 일부를 총회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본 기금의 일부를 총회 선교 사업을 위해 대여 사용케 할 수 있다. 단, 기금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활용 내용에 의한다.
3. 본 기금의 이익금 및 기금의 일부 대여 사용은 선교위원회 제청으로 실행위원회 결의에 의해 사용토록 한다.

제3조 (관리)

선교 기금의 관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선교 기금은 특별 회계로 하며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관리한다.
2. 기금 적립 방법은 총회유지재단 이사회가 정한다.
3. 유가증권 표기 명칭은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의 이사장과 총회 총무로 한다.
4. 기금 상황을 연 1차 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 (대여금)

대여금 총액의 한도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제5조 (대여기간)

기금의 대여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여 의무를 이행 완료 시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고 3년간의 대여 기간을 완료하였을 때는 대여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대여금 한도)

대여 한도액은 1 교회당 일금 3,000만 원으로 한다.

제7조 (이율과 취소)

1. 대여이율은 부과하지 않는다.
2. 대여의 취소

대출 결정을 한 후 서류 구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교회가 대출을 받아가지 않을 경우 그 대출을 취소한다.

제8조 (담보)

담보물의 제공은 부동산(교회당 또는 단체 명의의 재산 제외)의 근저당 설정을 원칙으로 하되 해 노회 결의에 의해 노회장 명의의 지급 보증서로서 같음할 수 있다.

제9조 (대여교회 선정)

1. 총회본부는 총회 회보에 신청교회를 공고하고, 선교기금을 필요로 하는 교회는 노회를 경유하여 총회본부에 서류를 제출한다.
2. 접수된 서류는 총회 선교위원회가 심의, 선정하여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대여 대상 선정기준)

1. 노회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취약 노회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3. 본 교단 교회가 없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4. 개척교회로서 교회당 건축부지 및 신축 자비에 한해서만 대여 대상을 선정한다.

제11조 (위약)

대여를 받은 교회가 상환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치 않을 시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위약금을 납부하되 원금의 10%를 내야 한다. (제102회 총회 결의사항으로, 2017년 9월 ~2019년 9월의 기간 동안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
2. 상환기일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상환치 않는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교회들에게는 선교기금 대여 선정교회에서 제외한다.

3. 상환기일을 3년 이상 경과할 시는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서 채무를 총회 상회비에 포함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1970년 9월	제55회	총회	제정
1973년 9월	제58회	총회	개정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통합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90년 9월	제75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